

수리남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수리남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	
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마을 공동 소유) 공동소유 벌채허가 ※ [발급기관: SBB] - (산림 전환, 별도 기능 필요 시) 부수적 벌채허가 ※ [발급기관: SBB] - 벌채확인서(Cutting Register(Kapregister)) ※ [발급기관: SBB]	첨부1,2
제 2 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FSC 인증서 (‘17.10월 기준 전체 산림 중 약 0.2%가 FSC 인증을 받음)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 3 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고 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 ※ [담당기관: 관세청] (목재목록과 수출허가서의 내용이 상호 보완관계에 있음)	첨부3과 4를 함께 제출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세금 납부 영수증(Retribution receipt) ※ [발급기관: SBB 세금 이사회(SBB-Tax directorate)] - 운송장(Approved Waybill(Vervoerbilijet)) ※ [담당기관: SBB]	첨부5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회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첨부 1. 벌채 확인서(Cutting Register(Kapregister))(1)]

MINISTERIE VAN NATUURLIJKE HULPBRONNEN № 55925
KAPREGISTER

Concessie/Vergunning no. 303 Naam opsteller Boswachter A. Soort bos: samenstichtingsbos nat
 Jaarkapafkote no. 1 Handtekening: nat eigendom
 Kapvlak no. 2 Datum velling 14 Feb. 2007 overig
 Inventarisatie periode no. 8

Houtsoort code	Boom Nummer	Diameter (cm)				Lengte (dm)	Label Nummer	Diameter (cm)				Lengte (dm)	Opmerkingen
		Voet		Top				Voet		Top			
		1	2	1	2			1	2	1	2		
RLO	13	68	71	43	47	186	NA-0873401	68	71	51	55	84	
							NA-0873404	51	55	43	47	82	
H6R	18	80	83	53	56	170	NA-0873405						
6KB	21	58	61	30	35	140	NA-0873403						
ROK	8	35	41	40	40	90	NA-0873402						

Specifie datum: De Boswachter Handtekening: Het Hoofd van de Dienst Bosbeheer
 Vertegenwoordiger van de Vergunninghouder Handtekening:

[첨부 1. 벌채 확인서(Cutting Register(Kapregister))(1) (번역본)]

수리남 천연자원부 № 55925
수확 등록

영업권/허가 번호: 303 등록인: 산림관리원 A 임지 구분: 영업지/공동 소유 벌채 허가지(HKV)/임대 임지
 구획 순별 번호: 1 서명: 부수적 벌채허가지(ICL)
 벌채 구역 번호: 2 벌채일: 2007년 2월 14일 : 사유림
 들름 번호: 8 : 기타

수종 코드	목재 번호	직경(cm)				길이 (dm)	라벨 번호	직경(cm)				길이 (dm)	비고
		원구		말구				원구		말구			
		1	2	1	2			1	2	1	2		
RLO	13	68	71	43	47	186	NA-0873401	68	71	51	55	84	
-	-	-	-	-	-	-	NA-0873404	51	55	43	47	82	
H6R	18	80	83	53	56	170	NA-0873405						
6KB	21	58	61	30	35	140	NA-0873403						
ROK	8	35	41	40	40	90	NA-0873402						

조사일: _____ 산림관리원 _____ 서명 _____ 산림경영청장
 등록 대리인: _____ 서명 _____

작성: 파라마리보 Paramaribo

[첨부 3. 수출을 위한 목재 목록(산림당국이 확인하여 발급한 것)]

LIJST VAN HOUTBLOKKEN VOOR EXPORT
(Rondhout/Paalhout)



Export vergunning#:
Export#:
Bedrijf:
Assortiment:
Volume:
Keuringsdag(en):
Afsluitdatum:
Opmerkingen:

수출업체 관련 번호,
조사일자,
산림청 직인(SBB)

De navolgende blokken zijn aangegeven voor export:

Label#	Hout R/P	Diameter (in cm)				Lengte (in dm)	Volume (in m3)	Opmerkingen
		Soort	Voet 1	Voet 2	Top 1 Top 2			
목재 상세 설명								

산림청 직인
(SBB, LBB)

Ingedeeld naar houtsoort:

Ingedeeld naar k

TOTAAL:

수종별 합계 및 총계

산림청 직인
(SBB, LBB)

[첨부 4. 수출허가서(허가신청서에 산림당국의 확인을 받은 것)]

Ex-Kantoor IUD

Republiek Surinam

Aanvraagformulier ter verkrijging van een vergunning
bedoeld in artikel 3 lid 3 en 8 van de Wet Goederen
Dienst der Invoer-, Uitvoer- en Deviezen

산림청 직인
(SBB, LBB)

Aard van de vergunning: Import Export

Naam importeur / exporteur: 수출업체 정보

Naam Leverancier / afnemer: 수입업체 정보

Betalingsvormen: documentaire kredieten
documentaireincassi
na ontvangst der goederen
vooruitbetaling

Volledige omschrijving der goederen: 목재제품 상세 설명

Land van oorsprong: SURINAME

Land van bestemming:

Land van verscheping: SURINAME

De importeur / exporteur verzoekt vergunning tot bestelling en invoer / uitvoer van bovenvermelde goederen

De importeur / exporteur: Paramaribo, 9-Jul-18
수출업체 서명

IMPORT / EXPORTVERGUNNING

Datum van indiening:

S.V.P. MET MACHINESCHRIFT IN TE VULLEN

수리남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임업진흥원이 2017년에 수행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표준 가이드 개발' 연구용역 자료입니다. 해당 국가와 추가 협의가 진행되는 경우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산림 현황

수리남의 산림은 15,332,000 ha로 전체 국토 면적의 9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¹⁾ 국유림이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약 26%를 생산을 목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는 원시림(Primary), 기타 천연갱신림(Other naturally regenerated), 조림지(Planted)으로 구분됩니다.²⁾

- 원시림 : 14,019,000 ha (91.4%)
- 기타 천연갱신림 : 1,300,000 ha (8.5%)
- 조림지 : 13,000 ha (0.1%)

이 중 보존림, 보호림, 생산림으로 지정된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림 : 2,000,000 ha³⁾
- 보존림 : 1,764,000 ha⁴⁾
- 보호림 : 1,890,000 ha⁵⁾

수리남은 산림관리법(Forest Management Act)과 산림법(Forest Law)에 따라 국토산림부(Ministry of Physical Planning, Land and Forestry Management)에서 산림정책 및 산림경영을 기획하고 산림청(State Forest Service)에서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벌채허가서, 수출허가서 발급 등 목재의 이용에 관련된 집행기관으로 산림경영·생산관리재단(Foundation for Forest Management and Production Control)이 있습니다.⁶⁾

1) The Global Resources Assessment 2015(Dest reference), p16,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 The Global Resources Assessment 2015(Dest reference), p47,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3)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24,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4)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68,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5)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73,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6) www.timbertradepotal.com/countries/suriname#legality-profile

벌채 허가 관련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1호)

수리남에서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법 제25조(Article 25 of the Forest Law)에 따라 기간과 면적에 대한 영업권(Concessionaire)을 토지 및 산림경영부(Ministry of spatial planning, land and forest management)와 지역개발부(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합니다.⁷⁾

- 단기 : 5,000 ha 미만의 면적 및 벌채기간 1~5년
- 중기 : 5,000 ha 이상 50,000 ha 미만의 면적 및 벌채기간 5~10년
- 장기 : 50,000 ha 이상 150,000 ha 미만의 면적 및 벌채기간 10~20년

영업권(Concessionaire)을 보유한 자는 산림경영 및 제한기관(Foundation for forest management and control)에 연간 벌채계획서를 제출하고 벌채목의 반출을 위한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서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발급됩니다.

- 공동소유 벌채허가(Communal Wood Cutting Permits, HKV) : 산림법 제58조(Article 58 of the Forest Law)에 따라 마을 공동 소유 산림에 대하여 발급됩니다.
- 부수적 벌채허가(Incidental Cutting Licences, ICL) : 산림법 제38조(Article 38 of the Forest Law)에 따라 산림을 전환하거나 별도의 기능이 필요한 경우 발급합니다.

벌채된 원목은 별도의 ID번호를 부여하여 산림지도원(Forest Guard)이 정기적으로 서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7) Information sheet: Forestry in Suriname, SBB(2011)

생산·유통·수출 관련 사항

수리남의 목재산업 구조는 1개의 합판 공장과 70개의 제재소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수리남의 수도인 Paramaribo에 위치하고 있습니다.⁸⁾

[참고]

출처 : Country Guide to Timber Legality : suriname, p8,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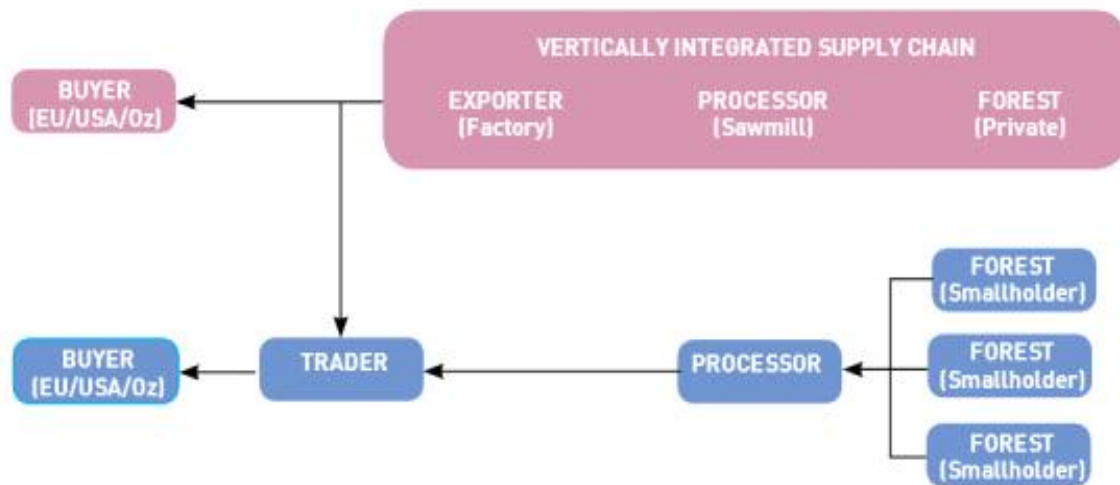


그림 55. 수리남 공급망 예시

수리남에서 목재산업 관련 업체는 산업통상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에 등록해야 하며 도시 내에서 생산을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Municipal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리남에서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수종은 다음과 같습니다.⁹⁾

- Gronfolo (*Ruizterania albilflora*)
- Basralocus (*Dicorynia guinansis*)
- Purperhart (*Peltogyne paniculata*)
- Kopi (*Goupia glabra*)

8) SBB. (2012). Surinamese Forest Sector 2011: Department of Forestry Economics Service

9) Country Guide to Timber Legality : suriname, p9, www.tft-forest.org

- Wana (*Ocotea rubra*)
- Bolletrie (*Manilkara bidentata*)
- Walaba (*Eperua spp*)
- Gele kabbes (*Vatairea guianensis*)
- Kimboto (*Pradosia ptychandra*)
- Wanakwari (*Vochysia tomentosa*)
- Bruinhart (*Voucapoua Americana*)

수리남에서는 몇 가지 수종에 대한 벌채와 교역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수종은 다음과 같습니다.¹⁰⁾

- Bolletrie (*Manilkara bidentata*)
 - * 산림 관리 기관(Foundation for Forest management and Forest Control)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 Hoepelhout (*Copaifera guianensis*)
- Inginoto (*Bertholletia exclesia*)
- Man Rozenhout (*Aniba spp.*)
- Rozenhout (*Aniba spp.*)
- Sawari (*Caryocar nuciferum*)
- Tonka (*Dipteryse oderata & punctata*)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출을 위하여 수출업자는 산림경영·생산관리재단(Foundation for forest management and control-)에서 수출허가서(Approval for timber export)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 제2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취득한 산림면적은 363,090 ha이며 CoC 인증은 6 건입니다.(2017. 10월 기준) 자세한 내용은 memberportal.fsc.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인증서는 <https://info.fsc.org/> 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인증을 취득한 산림면적은 0 ha이

10) Country Guide to Timber Legality : suriname, p9, www.tft-forest.org

며 CoC 인증은 0 건입니다.(2017. 9월 기준) 자세한 내용은 www.pefc.org/about-pefc/who-we-are/facts-a-figure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인증서는 <http://www.pefc.org/find-certified>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SC 인증 마크 >



< PEFC 인증 마크 >

담당자 연락처

- 성명 : Elaine Woode
- 소속 : Foreign Affairs Azaf Division
- 전화번호 : + 597 - 477251 - 247
- e-mail : elaine.woode@foreignaffairs.gov.sr